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항공청의 정원 1명(7급 1명)을 국토교통부로 이체하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건설 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고용노동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건복지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며, 건설 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5급 2명) 중 조달청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은 감축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4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

제54조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로, “충원”을 “각각 충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5년 2월 28일”로, “소속 공무원으로,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조달청 소속”을 “소속”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고용노동부장관 및 조달청장”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006”을 “1,0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995”를 “99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66”을 “970”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548”을 각각 “2,54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539”를 “2,538”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직	정원
1) 철도국 1개 과	3명
2)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	4명
3) 모빌리티자동차국 1개 과	2명

별표 6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8호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8일”로 한다.

6. 제59조제8항 관련 한시 정원(존속기한: 2025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운영지원과) ① (생략)	제8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9의2. <u>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u> <u>· 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 · 관</u> <u>리</u>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제54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제54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u>행정안전부</u> 소속 공무원으로 <u>충원</u> 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u>행정안전부장관</u> 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 ----- <u>행정안전부</u> , 1명(5급 1명)은 <u>산업통상자원부</u> , 1명(5급 1명)은 <u>고용노동부</u> ----- <u>각각</u> <u>충원</u> -----. ----- ----- <u>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u> ----- -----.
제59조(한시정원) ①·② 삭제	제59조(한시정원)
③ <u>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u>	<삭제>

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⑤ (생략)

⑥ 삭제

⑦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삭제>

다.

⑧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⑨ 건설 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⑧ -----

----- 2025
년 2월 28일-----

----- 소속 -----

----- 고용노동부장관-----
-----.

<삭 제>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⑩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⑪ · ⑫ (생략)

⑩ -----

----- 2024
년 2월 28일-----

-----.

⑪ · ⑫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06</u>	<u>1,010</u>	+4
·	·	·	
·	·	·	
일반직 계	<u>995</u>	<u>999</u>	+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66</u>	<u>970</u>	+4
·	·	·	

[별표 3]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548</u>	<u>2,547</u>	-1
일반직 계	<u>2,548</u>	<u>2,547</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539</u>	<u>2,538</u>	-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0